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김소희 · 진종오 · 이양수
박준태 · 고동진 · 안상훈
성일종 · 김미애 · 서범수
박덕흠 · 조경태 · 김위상
김상훈 · 김승수 · 박정훈
안철수 · 엄태영 · 김선교
우재준 · 김대식 · 박성훈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재정·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거쳐”를 “거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② ----- ----- ----- ----- ----- -----거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 ----- ----- ----- ----- ----- -----.
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

<u>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 ~ ⑨ (생략)	<u>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 ~ ⑨ (현행과 같음)
---	--